#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

신설 2017.09.29. 개정 2018.04.03. 개정 2018.10.04. 개정 2019.09.10. 개정 2021.11.27. 개정 2022.10.07. 개정 2023.07.12. 개정 2025.10.01.

제1장 총칙	제1조~제3조
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	제4조~제5조
제3장 선거유관기관	
제1절 선거관리위원회	제6조~제27조
제2절 선거운동본부	제28조~제35조
제4장 선거	
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	제36조~제37조
제2절 추천 및 후보등록	제38조~제45조
제3절 선거운동	제46조~제60조
제4절 징계	제61조~제66조
제5절 이의제기	제67조~제68조
제6절 투표	제69조~제87조
제7절 투표 성립	제88조
제8절 개표	제89조~제99조
제9절 당선	제100조~제101조
제10절 재투표, 결선투표 및 보궐선거	제102조~제104조
제11절 선거 정리 사업	제105조
제5장 선거시행규칙	제106조~제107조
부칙	

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【목적】

선거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5조에 의거,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【기본이념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워칙으로 한다.
-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.
-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.

### 제3조 【회원의 책임】

- ① 모든 회원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의결기구·집행기구·산하기구·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

#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

### 제4조 【선거권】

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에게 있다.

### 제5조 【피선거권】

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. 이때, '조'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.

- 1. 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가 등록 마감일 기준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하였으며,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인 조
- 2.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가 등록 마감일 기준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하였으며,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인 조
- 3. 공과대학 학생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. 단, 후보 간 중복 추천은 가능하다.
- 4.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
- 5. 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조
- 6. 본 세칙 제43조의 겸직 금지 조항을 만족한 조

# 제3장 선거유관기관

#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

# 제6조 【명칭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는 '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 원회'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.
-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'제00대'를, '선거관리 위원회' 앞에 '보궐' 등을 붙일 수 있다.

### 제7조 【목적】

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.

# 제8조 【지위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,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,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.

### 제9조 【직무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- 1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
- 2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
- 3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·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
- 4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
- 5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·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
- 6. 공과대학 학생회칙·선거시행세칙·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보완
- 7. 공과대학 학생회칙·선거시행세칙·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
- 8. 공과대학 학생회칙·선거시행세칙·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 본부 감시
- 9. 공과대학 학생회칙·선거시행세칙·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 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
- 10.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
- 11. 그 밖의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세칙·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【구성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책임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0조에 의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 위원회에 있다.
- ②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. 위원의 구성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0조를 따른다.
- ③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.
- ④ 각 학부/과/전공/반 학생회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# 제11조 【위원장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.
- 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.
-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·감독한다.

### 제12조 【부위원장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한 명을 둔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# 제13조 【위원의 의무】

- ①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, 선거운동,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이는 선거관리위원이 해임·탄핵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.

### 제14조 【위원의 해임】

- 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.
- 1.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
- 2.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·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 손한 경우
- 3.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경우
- 4.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
- ② 해임안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.
- ③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권한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있으며, 공과대학 학생회 운

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# 제15조 【위원장·부위원장의 탄핵】

- ①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.
- ② 탄핵안은 재적 위원 1/5 이상의 연서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. 이때, 위원장 권한대행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다.
- ④ 부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.
- ⑤ 탄핵은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피심 판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.
- ⑥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탄핵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직 또한 상실한다.

# 제16조 【권한대행】

- 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다.
- ②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권한대행을 호선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·부위원장 권한대행의 지위는 위원장·부위원장이 궐위된 순간부터 새 위원장·부위 원장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는 시점까지 존속된다.

### 제17조 【위원의 사임·추가임명】

- ①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사임 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·탄핵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추가임명할 수 있다.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의 추가임명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즉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의 사임, 해임·탄핵 또는 추가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·부위원장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·탄핵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·부 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.

# 제18조 【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】

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의 사결정기구이다.

#### 제19조 【전체회의의 소집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1. 위원장의 소집요구
- 2.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소집요구
- 3.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
- 4.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공청회 개최 요청에 따른 소집요구
-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1/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이때, 위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.
-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온라인 전체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소집·진행·표결한다.

### 제20조 【의결요건】

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21조 【표결방법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.

### 제22조 【출석요구】

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- 1. 후보자
- 2.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
- 3.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

### 제22조의2 【자료요구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거운동본 부에 요구할 수 있다.
- 1. 게시물·유인물의 원본 파일
- 2. 유인물·선거운동본부복·선거물품의 거래명세서 혹은 그 밖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3.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료
- ② 제1항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,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 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# 제23조 【회의 결과 공고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2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하여 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의 녹음을 실시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녹음본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1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전체회의의 경우, 제2항의 녹음본을 회의에 사용된 메신저의 대화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### 제24조 【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】

- ①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, 선거운동본부의 이견 조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청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, 부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되며,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1.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,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
- 2.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항
- 3.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청회 개최 요청
- ④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으로 제3항제3호의 공청회 개최가 요청될 경우,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.
- ⑤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. 온라인 연석회의는 선거운동본 부장 연석회의에 준하여 소집·진행한다.

# 제25조 【의결】

- ①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충분한 토론에도 좁힐수 없는 결정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안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직후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. 단, 사안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내에서 특정 결정·합의사항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할수 있다.
-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파악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 또는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 단,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외에서 이루어진 결정·합의사항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26조 【회의 결과 공고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2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녹음을 실시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녹음본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4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연석회의의 경우, 제2항의 녹음본을 회의에 사용된 메신저의 대화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### 제27조 【선거관리위원회실】

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 선거관리 위원회실을 배정해야 한다. 단.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실을 사용한다.

# 제2절 선거운동본부

### 제28조 【목적】

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,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·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.

# 제29조 【구성】

-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, 선거운동본부장,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은 선거가 예정된 학기의 개강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다.

### 제30조 【선거운동본부 사무실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학내 1개의 공간을 사무실로 둘 수 있다.
-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등록 시 사무실의 위치를 신고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가 등록 마감 시한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장소를 섭외해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 대여한다. 이때,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부/과/전공/반 학생회에 공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학부/과/전공/반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공간 확보를 요청한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.

# 제31조 【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,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.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,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.
-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.
-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. 단,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 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 단,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 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제32조 【선거운동본부장】

-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,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,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.
- ③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.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, 소 속 학부/과/전공/반 및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,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.
-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.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33조 【업무】

-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투표관리요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,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·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
### 제34조 【의무】

-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②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,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,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·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35조 【공동선거운동본부】

- ① 공동선거운동본부는 다른 선거운동본부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본 부명, 슬로건, 로고 등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.
- ② 공동선거운동본부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.
- ③ 후보 등록을 신청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/과/전공/반, 타 단과대학,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

동본부의 후보 등록을 보류 및 선거운동본부명, 슬로건, 로고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후보 등록이 완료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/과/전공/반, 타 단과대학,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 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.

# 제4장 선거

#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

### 제36조 【선거 일정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시기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2조를 따른다.
-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은 추천 및 등록 기간, 선거운동 기간, 투표일, 개표일로 구성된다.
- ③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2일 이상, 선거운동 기간을 5일 이상, 투표일을 5일 이하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.
- ④ 그 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제37조 【선거 공고】

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- 1. 제3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
- 2. 제39조제2항의 후보 등록 마감 일정
- 3. 제39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·파일 종류
- 4.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명단

# 제2절 추천 및 후보등록

# 제38조 【추천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② 추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.
- ③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.
- ④ 제1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은,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회원 1명과 1대1로 추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.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39조 【후보 등록 신청】

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

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후보 등록 신청서 (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름)
- 2.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서 (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름)
- 3.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각 1부
- 4.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력서 각 1부
- 5.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
- 6. 프로필 사진 1장
- 7. 핵심 선거공약, 슬로건, 선거운동본부명
- 8.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본부원 명단
-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8시로 한다.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제7호의 핵심 선거공약은 최대 3개로 한다.

### 제40조 【후보 등록 심사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·파일을 검토하고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.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회원 명단과의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·파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/과/전공/반, 타 단과대학,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제35조제1항의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등록을 보류 및 선거운동본부명, 슬로건, 로고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41조 【후보 등록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.
- ② 후보 등록 불허는 오직 제1항의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, 이외의 경우 해당 조의 공과 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완료된 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기호를 부여한다.

### 제42조 【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의무 소집】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40조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 결과와 선거시행세칙의 주요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회의에서 게시물·유인물의 수량 제한,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범위 설정, 전

자투표의 시행여부를 비롯한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.

### 제43조 【후보자의 겸직 금지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추천 및 등록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.
- 1. 공과대학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
- 2.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
- 3. 각 학부/과/전공/반 학생회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권한대 해
- 4. 산하기구·특별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기구에 사퇴 의사를 통지한 때 그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44조 【후보자의 사퇴】

후보자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후보자 두 명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. 단,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 다.

# 제45조 【후보 등록 등의 공고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1.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름, 소속 학부/과/전공/반 및 학번
- 2. 추천인 수
- 3.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이력
- 4. 슬로건, 선거운동본부명
- 5. 프로필 사진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·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한다.

# 제3절 선거운동

#### 제46조 【선거운동】

-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.
-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1.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2. 공과대학 학생회의 집행기구·산하기구·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
- 3.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할 수 있다.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위 파악 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47조 【사전선거운동】

-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2.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
- 3. 방송·신문·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4. 정견발표회·좌담회·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5.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
-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1.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
- 2. 제38조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
-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48조 【사후선거운동】

- ① 선거운동 기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
- 2. 정견발표회·좌담회·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3.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
-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1. 제86조제1항의 투표 권유 행위
- 2. 기존에 게재되어 있던 현수막·포스터·온라인 게시물이 철거 혹은 삭제되지 않은 경우
-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# 제49조 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1. 학교 외부의 장소. 단,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에 따른 공동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2. 기숙사 건물 내부
- ②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미 학교 내부에서 배포된 선거물품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본 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수 있다.

# 제50조 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1. 선거관리위원장·부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
- 2. 후보 등록 마감 시각에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, 현재 그 직에 있는 자
- 3. 후보 등록 마감 시각에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에 있었거나,

현재 그 직에 있는 자

- 4.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자
- ② 선거관리위원장·부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해임·탄핵되거나 사임하여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위 파악 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 제51조 【선거운동 방법】

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- 1. 유세
- 2. 간담회 참가
- 3. 선전물(대자보, 현수막, 유인물, 정책자료집)의 게시·배포
- 4.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·인터뷰 참가
- 5.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
- 6.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
- 7.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

### 제52조 【유세】

- ①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,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·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단,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,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유세와 관련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 제52조의2 【선거물품】

- ① 선거물품이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마이크, 앰프, 확성기 등의 음향기기 및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본부가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물건을 일컫는다.
- ②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음향기기는 건물 외부에서만 허용된다. 단, 강의실 내 음향설비는 사용할 수 있다.
-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유권자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선거물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디자인, 규격, 수량, 제작 및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제56조에 해당하는 유인물은 제외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선거물품 디자인, 규격, 수량, 제작 및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승인한다.
-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# 제53조 【간담회】

- ① 간담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다.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간담회를 개최한다.
- ② 후보자는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, 간담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. 선거운동본부가 간담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- ③ 간담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, 학내 언론사 및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으로 구성되다.
- ④ 간담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.
- ⑤ 간담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위임한 선거관리위원이 맡는다.
-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 간담회 종료 후 3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제54조 【게시물·유인물·인터넷 선거운동의 제한】

- ① 게시물·유인물이 제55조 및 제56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·유 인물의 게시·배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 다
- ② 선거 관련 게시물·유인물·인터넷 선거운동의 내용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 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·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 며,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.

# 제55조 【게시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】

-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이하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.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다.
- ② 선거운동본부는 가로 10m, 세로 1.1m 이하의 현수막을 4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대자보 수량 및 제2항의 현수막 수량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 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 단, 수량은 게시되어 있는 수량을 말한다.

# 제56조 【유인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각 유인물의 종이 양면 면적의 총합은 A2 이내로 한다.
- ③ 유인물은 회당 4,000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.
- ④ 유인물은 겉면에 "제00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<선거운동본부명> 0차 리플렛"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.
- ⑤ 제3항의 유인물 수량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 제57조 【정책자료집】
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.

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.

- ②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. 각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 는 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.
- ⑤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# 제58조 【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②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제42조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.
- ③ 그 밖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④ 선거운동본부가 결정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 제59조 【선거운동본부복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,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, 상징물,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,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# 제60조 【선거공영제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전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,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당 10만 원 이상으로 선거공영자금을 결정해 각 선거운동 본부에 균등 분배한다. 단, 선거운동기간 도중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선거운동본부는 그 금액의 절반 이하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# 제4절 징계

### 제61조 【징계】

- ① 징계라 함은 선거시행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,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없다. 단, 하나의 행위가 여러 수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,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여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고의성,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, 혹은 그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 전

체회의에서 의결한 경감 사유가 있을 경우. 유권해석을 통해 하위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.

### 제62조 【징계의 종류】

- ① 징계는 시정명령, 주의, 경고로 나뉜다.
- ② 시정명령이 3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. 시정명령 3회가 주의 1회로 전화되면,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.
-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.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,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.
-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.
- ⑤ 경고가 3회 누적된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추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다.

### 제63조 【시정명령】

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줄 수 있다.

- 1. 제2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제3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
- 3. 제31조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
- 4. 제32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
- 5. 제46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
- 6. 제54조제1항의 게시물·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
- 7. 제67조제4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
- 8.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, 선거시행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

#### 제64조 【주의】

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줄 수 있다.

- 1.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 에 시정하지 않을 때
- 2. 시정명령을 세 번 받았을 때 (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.)
- 3. 제22조의2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
- 4. 제2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5. 제31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
- 6. 제38조제4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을 활동을 할 때
- 7. 제40조제2항의 회의에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
- 8. 제40조제3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·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
- 9. 제47조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
- 10. 제48조제3항의 사후선거운동을 할 때
- 11. 제49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

- 12. 제50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
- 13. 제52조의2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 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때
- 14. 제53조제2항의 간담회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
- 15. 제55조제3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, 현수막의 게시 장소, 게시 수량을 어길 때
- 16. 제56조제5항의 유인물 발행 수량을 어길 때
- 17. 제57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
- 18. 제58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·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
- 19. 제59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,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
- 20. 제9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대리인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
- 21.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

### 제65조 【경고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줄 수 있다.
- 1.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
- 2.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(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.)
- 3. 제35조제3항의 후보 등록이 완료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/과/전공/반, 타 단 과대학,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때
- 4. 제54조제2항의 게시물·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 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
- 5. 제81조제4항의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
- 6.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, 다른 후보자,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, 참관인에게 금전·물품·향응 및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
- 7.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,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·본부원을 폭행·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
- 8. 선거에 관하여 집회·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
- 9.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·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·게시·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 거나 이를 훼손·철거할 때
- 10.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,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
- 11.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,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
- 12.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,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
- ② 경고를 주었을 시,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명과 징계 사유를 포함한 대자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게시판 및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.

### 제66조 【징계의 의결·취소】

- 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.
- ② 징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
- ③ 징계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.

# 제5절 이의제기

### 제67조 【이의제기의 방식】

-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만 할 수 있다.
-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.
- ③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단,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에서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68조 【이의제기의 처리】

- ① 접수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. 단,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 없이도 이의제기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
-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,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.
- ③ 이의제기가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우,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이를 처리한다.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 제6절 투표

### 제69조 【투표방법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, 온라인, 모바일 그 밖의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, 대상, 방식,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.

# 제70조 【전자투표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.

- ③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,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표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솔루션을 실행하여야 한다.
- ⑤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선거공약,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.

### 제71조 【투표관리요원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된 투표관리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된 경우 그 투표소에는 두 명 이상의 투표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③ 투표관리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, 투표 참여 호소,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한 발언을 할 수 없다.
- ④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, 각 학부/과/전공/반 학생회,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 원회가 투표관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72조 【투표일·투표시간】

- ① 투표는 5일 이내로 진행한다.
- ②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단,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투표소 및 전자투표의 투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 제73조 【투표소】

- 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.
- ② 투표소 1개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·투표함 및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.
-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.
- ⑤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 제73조의2 【투표소 게시물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1.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진
- 2. 공동정책자료집
- 3. 각 선거운동본부의 징계사항 목록
- ② 징계사항 목록에는 징계 사유가 병기되어야 하며, 하위 징계가 누적되어 상위 징계가 부여된 경우 하위 징계의 부여 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.

## 제74조 【투표용지】

① 투표용지에는 해당하는 선거의 명칭, 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및 소속 학부/과/전공/반, 학번, 선거운동본부명,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을 표시하여야 한다.

- ②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용지상 게재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.
-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"찬성", "반대" 란을 두어야 한다.
- ④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.

### 제75조 【투표용지의 송부】

-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4조에 따라 제작하여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소로 송부한다.
-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·감독하는 자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.

### 제76조 【투표절차】

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
- 1. 선거인명부 검색
- 2. 투표관리요원이 투표자의 신분증과 투표자 본인, 선거인명부상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
- 3. 투표자 본인이 선거인명부의 본인 이름 옆에 서명
- 4. 투표관리요원의 투표용지 확인
- 5. 투표용지 배부
- 6. 기표 및 투표

### 제77조 【본인 확인】

-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② 투표자의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하되, 학생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과 본인의 소속 및 학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.
-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휴학생은 제2항에 규정된 신분증과 재적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다. 이때 투표 관리요원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선거인명부 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 제78조 【투표용지 배부】

- 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다.
-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
# 제79조 【기표·투표】

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

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-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.

# 제80조 【투표참관인】

-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.
-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관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때, 투표참관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 제81조 【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】

- ① 투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해 투표 상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.
- ③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④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82조 【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】

-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
- 2. 특정 후보·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
- 3.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
- 4.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
-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.

### 제83조 【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】

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### 제84조 【투표의 비밀보장】

-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.
-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,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.

### 제85조 【투표함 확인 및 보관】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, 남은 투표용지, 선거인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. 단, 선 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 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86조 【투표 권유 행위】

- ①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 투표 권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- ② 제1항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에 소속 선거운동본부로의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, 이를 어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87조 【연장투표】

투표 기간 내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. 이때,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연장투표의 기간은 본투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.

# 제7절 투표 성립

# 제88조 【투표 성립 요건】

-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가투표수가 총 유권자 수의 과반수일 때에 성립한다.
- ②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3조제6항에 의하여, 투표가 성립한 경우에만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투표수를 확정한 후 투표 성립 여부를 공고한다.

# 제8절 개표

### 제89조 【정의】

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.

- 1. 유권자: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
- 2. 총 유권자 수: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
- 3. 이중투표: 유권자가 복수의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,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여러 번 투표하는 행위
- 4. 이중투표수: 각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수의 합에서,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의 수를 뺀 수 (예를 들어, 유권자 5명의 서명이 13번 발견될 경우 이 유권자 5명에 대한 이중투표수는 8이다.)
- 5. 대리투표: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부정행위

- 6. 대리투표수: 적발된 대리투표 사례의 수
- 7. 부정투표: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부정행위
- 8. 부정투표수: 적발된 부정투표 사례의 수
- 9. 가투표수: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
- 10. 가투표율: 가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("(가투표수) / (총 유권자 수)")
- 11. 투표소별 가투표수: 각 투표소에서 이중투표, 대리투표, 부정투표가 아닌 정당한 투표를 진행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수
- 12. 실투표수: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
- 13. 실투표율: 실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("(실투표수) / (총 유권자 수)")
- 14. 투표소별 실투표수: 각 투표소에 해당하는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
- 15. 무효표: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
- 16. 기권표: 아무 기표도 되어있지 않은 표
- 17. 투표소별 오차: 각 투표소의 투표소별 가투표수와 투표소별 실투표수의 차의 절댓값 ("|(투표소별 가투표수) (투표소별 실투표수)]")
- 18. 오차: 모든 투표소의 투표소별 오차와 이중투표수, 대리투표수, 부정투표수의 합
- 19. 표차: 각 선거운동본부가 획득한 표수의 차

### 제90조 【투표용지의 무효처리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- 1.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- 2.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것
- 3.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
- 4. 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
- 5.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 혹은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표시한 것
- 6. 기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.
- 1. 기표한 것의 일부분이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
- 2. 후보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
- 3. 두 후보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- 4.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- 5.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
#### 제91조 【개표관리】

-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.
- ② 개표장에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# 제92조 【개표장】

①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이전에 개표장의 위치와 개표 시작 시각을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93조 【개표절차】

-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.
-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- 1. 가투표수 확인 및 투표 성립 여부 공고
- 2.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
- 3.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
- 4. 후보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
- 5.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
- 6.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
- 7. 제6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
- 8. 최종 결과 발표

### 제94조 【표의 해석】

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### 제95조 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,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장에 있어야 한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원 1인을 대리인으로 파견할 수 있다.
- ③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대리인이 개표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 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### 제96조 【개표참관인】

-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한 명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.
-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,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.

#### 제97조 【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】

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람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98조 【투표용지·선거인명부 등의 보관】

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·선거인명부 등을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99조 【개표 결과】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실투표수, 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수, 기권표의수, 무효표의 수를 확정한다.
- ② 개표 결과는 가투표수, 실투표수, 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수, 기권표의 수, 무효표의 수, 오차로 구성된다.

# 제9절 당선

# 제100조 【당선의 기준】

- ① 개표 결과 최다득표한 조를 당선 조로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102조, 제103조, 제104조에 따라 재투표·결선투표·보궐선거를 시행한다.
- 1. 최다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인 경우
- 2. 최다득표 조와의 표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조가 있는 경우
- 3. 후보가 한 조이면서 "찬성" 표의 수와 "반대"표 수의 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
- 4. 후보가 한 조이면서 "찬성" 표의 수가 실투표수의 과반이 아닌 경우

### 제101조 【당선공고】

-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, 공고한 때로부터 72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.
-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 단, 이의신청이 당선자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과 관련된 경우 제101조의2를 따른다.
- ③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.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공과대학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, 소속 학부/과/전공/반, 학번
- 2. 공과대학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
- 3. 최종 투표율
- 4. 투표 결과 (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, 총 득표수, 득표율을 포함한다)

### 제101조의2 【당선취소】

- ①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선자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, 당선자의 당선취소 여부를 논의하다.
- ② 당선취소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.

# 제10절 재투표, 결선투표 및 보궐선거

### 제102조 【재투표】

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

다

- 1. 후보가 한 조이면서 "찬성" 표의 수와 "반대" 표의 수의 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
- 2. 투표함을 분실한 경우
- 3. 선거인명부를 분실한 경우
- 4.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한 경우
- 5.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
- 6. 전자투표 시행 시 해킹 등의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 및 유실이 발생한 경우
- 7.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제101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8. 오차가 가투표수의 5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재투표가 결정된 경우 이전 투표 결과는 무효화되며,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 실시 사실 및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.

# 제103조 【결선투표】

- ① 최다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최다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했한다.
- ②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오차의 2배 이하인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.
- ③ 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3일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,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.

### 제104조 【보궐선거】

- ①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4조에 의거, 보궐선거를 실 시할 수 있다.
- 1. 연장투표에서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
- 2. 후보가 한 조이면서 "찬성" 표의 수가 실투표수의 과반이 아닌 경우
- 3. 등록한 후보가 없는 경우
- 4.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
- ② 보궐선거의 일정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# 제11절 선거 정리 사업

#### 제105조 【공동선거평가단】

- ① 공동선거평가단은 선거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와, 선거 과정에서 생산된 의제의 평가 및 정리를 위한 기구이다.
- ② 공동선거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의해 구성되며,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.
- 1. 선거관리위원장
- 2. 각 선거운동본부장
- 3. 선거관리위원
- 4.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③ 공동선거평가단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

- 2. 이후 공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동의 과제들
- 3.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의제에 대한 논의
- 4. 낙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및 집행 가능성
- ④ 공동선거평가단은 투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모임을 소집한다.
- ⑤ 공동선거평가단은 공과대학 학생회 또는 공과대학 학부/과/전공/반 대표 연석회의와의 공동 주최로 대중 평가회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 대중 평가회는 대자보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일정을 공고하고, 그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한다.
- ⑥ 공동선거평가단의 회의 또는 대중 평가회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공고한다.

# 제5장 선거시행규칙

# 제106조 【선거시행규칙】

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.

# 제107조 【제정·개정·폐지】

-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·개정안·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.
- 1.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의 발의
- 2. 선거관리위원의 발의
- 3.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발의
-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소된 경우,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시행규칙은 모두 폐지된다.

# 부칙

# 제1조 【적용 및 전례의 인정】

본 선거시행세칙은 제31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부터 적용한다. 단, 구 세칙에 따라 본 선거시행세칙 공포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, 유권해석 시 전례로 활용할 수 있 다.

# 제2조 【개정 후 적용】

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, 개정안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.